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지방세법 개정(2009. 2. 6)에 따라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토록 되어있음. 그러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하는 경우 도시계획세의 부담이 늘어나므로 2009년도 도시계획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도시계획세의 세율(제91조)을 현행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인하 적용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을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 질의 및 답변 :

- 문 : 공정시장가액 비율로 준용하면 도시계획세가 증가하는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 답 : 규정된 세율로 하면 세수가 증가되지만, 현재 어려운 경제를 감안하여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세율을 인하하였으며, 이에 우리군은 3천만원 정도 세액을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7. 토 론 : 없음

8. 심사결과 :

- 2009. 5. 11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